

★ ◎

실장 방침 제70호

문서번호	계약팀-2296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1.03.04
공개여부	공개

팀원	계약팀장	경영지원실장		
		03/04		
김윤지	김해철	김주영		
협 조				

물품 제조 및 구매 관련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선정위원회 운영안내

서울특별시 SH공사

(계 약 팀)

물품 제조 및 구매관련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서울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개정에 의거하여 특정제품 및 수입제품, 토목건축 등 공사 특수공법(자재)를 제조 및 구매할 경우, 공사 내부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약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계약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개정-공포(2010.09.30)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14045(2010.10.21)
- 계약팀-15703(2010.10.22) 『물품·제조구매관련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확대 알림』

2. 계약 심사대상(2010.09.30)

- 심사대상 금액(추정가격기준)-VAT 불포함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일반 공사 (토목·건축)	조경·전기· 통신·설비공사	기술 용역	학술·일반 용역	
5억원이상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심사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 법령상 의무조달발주 대상 사업
- 대안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조달발주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대폭위임으로 500억원이상 PQ공사 및 1억원이상 물품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발주 사업으로 변경
- 방침으로 심사 제외한 사업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받은 기술용역
- 유류구매,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시 재무과), 사료용 농축산물구매, 해외 수입 동물류 구매, 식당 식자재 구매, 국내/해외 웹DB(전자저널) 구독, 청사 및 전동차 청소용역, 정수시설 청소용역,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업무위탁용역,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용역,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 포장도로 정비·유지보수공사, 임대아파트 재도장, 도배, 바닥교체 공사, 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 배수지 향청소 용역,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매·임차, 예술작품 창작·구매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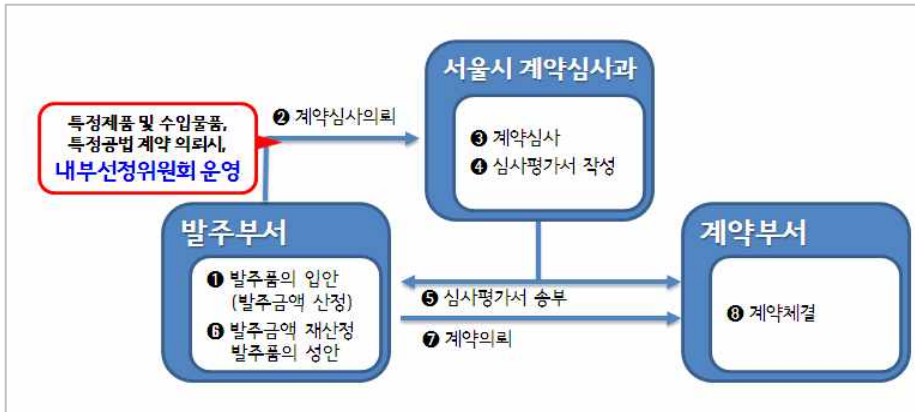
3. 계약 심사대상 확대(2010.10.21)

물품의 제조·구매

2천2백만원 이상 → **변경 2천만원 이상(VAT 포함가격)**

4.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 계약시 심사절차 변경

- 계약심사변경 절차도



- 계약심사절차 변경내용

특정물품 및 수입물품, 특정공법을 제조 및 구매해야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 후 결과물을 서울시 계약심사 의뢰시 제출

- 특정물품 등에 대한 용어정리

1. 특정제품

- 특정제품이란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 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특정제품에는 특허제품을 포함하며, 제품외에 특정공법·특정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2. 품명

- 제품의 특정 이름이며, 품목은 품명의 목록을 말함
(예) 컴퓨터의 경우 삼보 루온825를 칭할 때는 품명이고, 삼보루온 · 드림시스 · 삼성 매직스테이션 등을 총칭할 경우 품목임

3. 품명당 가격

- 1개당 품명가격뿐만 아니라 동일 품명의 수개의 합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말함

4. 설계금액

- 공사 및 물품제조사 설계내역서상 금액을 말하며, 설계금액은 기계경비를 포함한 순공사원가이며 부가가치세와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5.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의 3호에 의거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함

- 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1. 계약심사 대상사업중 특정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개최

2.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1)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개 구매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대상임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3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두가지 품명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1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님

2)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조의 경우

- 특정한 설비기술이 1개 또는 수 개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위원회 개최대상임
-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발주 건은 수입무품구매사유서(의결서) 제출 생략(계약심사과-13365호, '08.11.03, 수입물품구매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개선계획 통보)

3. 토목건축 등 공사의 경우

1) 공사금액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개 구매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6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6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두가지 품명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6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3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님

- 2)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의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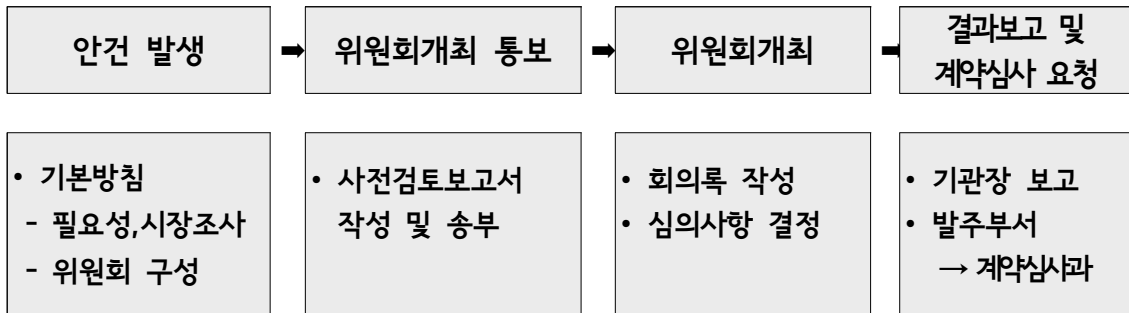
- 특수한 기술, 특정공법에는 '신기술'은 제외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임
- 설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판단은 설계도서중 설계내역서(설계예산서)상의 공종별, 공종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별첨1,2 참조)

- 선정위원회 구성

- 1) 위원회 명칭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 2) 기 능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구매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 검토
 - 수입대체품목(국산품) 전환사용 가능여부 검토
 - 특정제품 및 특정(특수)공법 선정과 설계 반영의 적정여부 검토 등
- 3) 구성방법
 - 위 원 장 : **발주부서 본부장(실장)급 이상**
 - 구성인원 : **당해사업 발주 팀 직원을 배제한 5~7명 (위원장 포함)**
 - 간사는 당해 사업 발주부서 팀장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이 가능

- 위원회 운영

1) 운영절차 개요



2) 위원회 개최 통보

- ①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위원회 개최 안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발주부서 담당자 및 담당팀장이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② 위원회 개최 통보

3) 위원회 개최시, 의결(의사결정) 방법

- ①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추천안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채택 방법
- ②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대안중 최적안 또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합의에 의거 통과하는 방법

- ③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로부터 대안중 최적안을 선정토록 하여 의결정족수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

4) 개최결과 보고

- ①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사항에 대한 개별 사인을 받도록 함
- ② 심의사항 정리는 의결방법에 따라 예시된 4가지 방법중 가장 적절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5. 기타 참고사항

- ※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첨서식 이외의 서식 및 기타사항은 첨부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 참고

(별첨1)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서			
요청부서		요청일	
총사업비		특정제품비	
공사(사업)명			
공사개요 (사업개요)	○공사위치 : ○사업규모 - - ○사업비 : ○계약방법 :		
심의요청 내용	○심의대상(심의안건) - ○ ○ 특정제품(공법) 선정 ○특정제품개요 - - - - ○심의요청사유 - -		
별첨서류	1. 공사(사업) 세부 설명서 1부. 2. 특정제품 심의 사전검토서 1부. 3. 000 1부. 끝.		

(별첨2)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안 건 명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2011. 00. 00.

심의위원 :

(서명)

(별첨3)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안 건
 -
2. 일 시 :
3. 장 소 :
4. 의결사항 : 별첨

2011. 03.

서울특별시 수입물품 및 특정물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본부장 ○ ○ ○ (인)

위 원 ○○팀 장 ○ ○ ○ (인)

위 원 ○○팀 장 ○ ○ ○ (인)

위 원 ○○팀 장 ○ ○ ○ (인)

위 원 ○○팀 장 ○ ○ ○ (인)

위 원 ○○팀 장 ○ ○ ○ (인)

위 원 ○○팀 장 ○ ○ ○ (인)

(별첨4)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시 : 2011. 03. 00(화)

안 건 명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

심의결과

- 예시1)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심의 내용중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 예시2)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채택’ 의결함
- 예시3)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대안중 제0안을 채택 의결함
- 예시4)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대안중 제0안을 채택 의결하되, 아래 심의내용중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임

【주요 심의내용】

- -
 -
- -
 -
- 지적 보완사항
 -